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7 선고 2022가단1023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21,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53089), 위 사건에서 2004. 4. 7.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00.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년경 C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단4407), 위 사건에서 2014. 2.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C이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D 임야 8,800㎡ 중 B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11.경 공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순위	배분순위	금액(원)
1	채납처분비	2,946,110
2	진해구청	1,318,000
3	서부산세무서	36,857,200
4	C	42,521,860

라. 피고는 2016. 10.경 C에 대한 배분 근거가 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C으로부터 42,521,860원을 회수하였고, 위 돈을 조세채권자인 서부산세무서에 추가 배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으로부터 회수한 위 42,521,860원은 원래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피고가 위 금액만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42,521,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회수한 42,52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회수한 42,52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었어야 하더라도, 위 돈이 서부산세무서에 추가 배분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그만큼 이익을 보았다고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